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7.(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의안번호 제98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2. 제안설명 요지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창원시정연구원	3,773,424	3,461,791	311,633
한국지방세연구원	94,298	86,707	7,591

4.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주요 내용

1)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가. 출연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연　　혁 : 법인 설립등기 2015. 4. 7., 개원 2015. 6. 16.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 기　　금 : 685,185,689원

나.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감
출 연 금	3,773,424	3,461,791	311,633

다.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라. 기대효과

○ 광역시 규모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뒷받침

○ 급변하는 행정수요 예측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장기적·전문적·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가. 출연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지방세·재정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 립 일 : 2011. 2. 2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나.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감
출 연 금	94,298	86,707	7,591

다. 산출기초 : 전전년도('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라. 출연기한 : 당해연도 3. 31.

마.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바.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6.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등 (안건책자 참조)

7.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1)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 특화산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행정수요 예측과 정책 대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임.

○ 2027년도 출연금은 3,773,42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1,633천 원(약 9.0%)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 요인은 기본급 인상과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상승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일부임.

【출연금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과목명	'27년 출연금	'26년 본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요인
총 계	3,773,424	3,461,791	311,633	
연구사업비	411,140	411,140	-	
인력운영비 (기본급, 제수당, 공무직 및 기간제 등 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3,005,788	2,706,870	298,918	- 인건비 기본급 5.3% 인상 반영 및 연구위원 신규채용 2명 반영 등 - 평가급 증액 - 연구직원 직급보조비 반영, 특정업무경비 증액(8만원→12만원) 등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등)	280,006	267,291	12,715	- 복리후생비 증액 (정액급식비 14만원→16만원, 복지포인트 등)
일반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72,990	72,990	-	
기타(법인세)	3,500	3,500	-	

○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연구원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음.

○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와 시정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데이터 기반 연구와 창원국가산단의 AI·AX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축소사회에 대비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탄소중립 모델 구축 등 산업 변화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창원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분야별 전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성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연도별 출연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연금 동의액	3,409,971	3,501,912	3,535,295	3,479,471	3,479,471	3,773,424
본예산	2,925,106	3,245,106	3,197,606	3,405,381	3,461,791	
추 경	320,000	100,000	-	-	-	
합 계	**3,245,106**	**3,345,106**	**3,197,606**	**3,405,381**	**3,461,791**	**3,773,424**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동의안(A)	2026년 본예산(B)	증감액(A-B)	비 고
합계		3,940,626	3,628,993	311,633	
영업수익	출연금	3,773,424	3,461,791	311,633	
	출연금 이자수익	31,702	31,702	-	기금 정기예금이자 + 출연금 단기운용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500	500	-	4대보험 정산반환금 등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35,000	135,000	-	

【출연금 집행(안)】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총 계		3,773,424
인건비성경비	・인건비 : 2,354,671천원 - 원장・연구직・관리직 : 30명 - 공무직(전문연구원) : 5명 - 기간제근로자(연구보조원, 청소원) : 5명 ・퇴직급여 : 50,000천원 ・평가급 : 195,777천원 ・직무수행경비 : 130,500천원 ・연금부담금 : 274,840천원	3,005,788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 127,502천원 ・일반운영비 中 일부(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 152,504천원	280,006
연구사업비	・연구사업비 : 355,720천원 ・창원학연구센터 : 43,500천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 11,920천원	411,140
일반관리비	・여비 : 35,420천원(국내 25,420, 국외 10,000) ・업무추진비 : 13,440천원 ・교육훈련비 : 5,8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 4,000천원 ・관서업무비 : 13,280천원 ・일반보상금 : 1,050천원	72,990
기타영업외비용	・법인세 등 : 3,500천원	3,500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재정 분야의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기관임.

○ 2027년도 출연금은 94,298천원으로,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며, 전년도 대비 7,591천원이 증액된 금액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기한도 매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 산출 내역 : 942,978,023천원 × 1.0/10,000 = 94,298천원

○ 따라서 법령상 산출기준에 따른 출연으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발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세연구원의 정책연구 용역,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 자문, 최신 판례 및 질의응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의 세정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연구 결과와 제공 자료가 실제 세정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주요 연구과제】

구 분	연구 과제명
연구사업 수행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 인정을 위한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타당성 연구
	대산석유화학 사업재편 지방세 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
	지방정부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 모색 -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제도 개선
	상속 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합리적 개선 방안
	장기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개선방안
	지방세무직 운용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세무조직 진단 및 개편 방안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 제도 개선방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 개선방안
	청주시 세무조직 개편 방안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방안 연구 - 경기도 및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강원연구개발특구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지표 설정 방안 연구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방식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잔가율 개선방안 연구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운영 실태조사 등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구축 연구
	건축물 용도에 따른 시가표준액 재분류로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에 대한 공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방안 모색
	공시된 가액이 없는 부동산의 효율적 과세 방안 연구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개선 방안
	표준·공동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검토

8.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9. **토론 요지**: 기재 생략

10.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